

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문미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7423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6. 16.

발 의 자 : 문미옥 · 고용진 · 윤종오

김정우 · 신용현 · 박 정

이원욱 · 신경민 · 김병관

홍의락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뿌리산업에 필요한 인력을
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, 기능대학, 과학기술
원 등의 기관을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
하고 있음.

그런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과학기술원으로 한
국과학기술원, 광주과학기술원,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명시되어 있으
나, 울산과학기술원은 제외되어 있음.

이에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도 뿌리산업 전
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1항제
3호).

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3호 중 “광주과학기술원” 및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”을 “광주과학기술원,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” 및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의 지정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	제10조(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의 지정) ① -----
1. · 2. (생략)	-----
3.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,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<u>광주과학기술원</u> 및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	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광주과학기술원,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
4. · 5. (생략)	4. · 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